

## '99. 2차 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안내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8호(산업기술개발융자산업 운용요령: '99. 1. 21), 동 공고제1999-20호('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99. 1. 21)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공고 제1999-1호에 의거 '99. 2차 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지원규모 및 대상

#### 가. 지원규모

-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분야 : 전자분야 300억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분야 : S/W 및 D/B분야 100억원

#### 나. 용자대상

##### 1) 자본재 시제품 개발 사업분야

-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육성 관련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 '98. 12. 31)한 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의 개발사업
- 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재 품목의 개발사업

##### 2) 첨단 기술제품 개발 사업분야

- 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1996-389호, '96. 1. 15)
- 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사업

### 2. 용자조건 및 한도

#### 가. 현물담보의 경우

대출금리	용자기간	유자비율	과제당한도액
연 7.0%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30억원이내

※ 단, 대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기술담보의 경우

대출금리	용자기간	유자비율	과제당한도액
연 7.5%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30억원이내

- ※ '99년 기술담보 대상자금(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 500억원 이내에서 기술담보 대출할 예정임
- ※ 기술담보 신청 및 접수문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업기반담보실(전화 : 02-8298-723~5)

### 3. 신청,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 가. 신청 및 접수방법

##### 1) 신청 및 접수기간

- 제2차 : '99. 4. 23(금)까지

##### 2)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개발표준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2층 (우)135-080
- 전화 : 02-553-0941, 565-5803(교환 : 381-383)

##### 3)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4)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 내려받아 활용)
- 나) 최근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본)
- 라) 기타 지원 우대조치 관련 증빙서류(제출업체만  
우대적용)

5) 신청서양식 및 핵심자본재 품목 리스트 등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 www.eiak.org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마감  
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지원 우대조치(증빙서류 제출업체에 한해  
적용)

- 1) 전년도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총매출액의 5% 이  
상인 중소기업(재무제표 기준)
- 2)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 3)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협약  
서, 약정서등)
- 4) 산업계 또는 학계나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  
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에 대한 기본계획과  
함께 용자사업자별로 용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야 함
- 5)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공업기  
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  
하는 경우(개발완료 확인서)
- 6)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고시(산업자원부 고  
시 제1998-133호, '98. 12. 31) 상의 우선지원 대  
상기업

다. 주의사항

1) 지원 제외대상

- 동일과제로 지원 받은 사업자
- 금융기관에 의한 여신제재자
- 자금사업에 참여제한조치를 통보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후관리 비협조자

2) 총사업기간 : 36개월 이내

4. 기타

가. 제3차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연도 제1  
차 사업자선정시 심의·지원하되, 사업연도내에  
미활용 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신청사업자  
중 용자사업자로 선정 지원할 수 있다.

나. 자본재 시제품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  
한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에 80%를 지원  
하고, 기타 일반품목에 대하여 20%를 지원할  
계획임

가전제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단축 안내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소비  
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운  
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4월에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전, 컴퓨터, 통신 관련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을 2년으로 과다 설정함으로써 그동안 관련업계의  
무상 A/S비용 부담(A/S비용 : 3000억원/년 추정)  
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전자업계의 큰 애로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전자업계 경영애로 개선을 위해 가전제품 등에 대한 과도한 품질보증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 건의하였던 바, 이번에 개정경제부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99. 3. 13)하여 가전제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근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1999-7호)

나. 품질보증기간 개정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계절제품(에어컨, 전기난로, 선풍기, 가습기 등 4개 품목)	2년	2년	일반제품 : 대상품목 중 계절제품을 제외
일반제품	2년	1년	한 품목
핵심부품	-	3~4년	신 설

다. 시행일 : 1999. 3. 13

※ 관보 제14152호('99. 3. 13) 중 관련내용 (오른쪽 표)

해외 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안내

최근 산업환경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쟁여건 및 시장환경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 전자업계에서도 해외 생산,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제품의 일부를 국내에 재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의 경우 재수입 제품의 경쟁력 제고 및 부품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개정전 관세법에서는 해외 반출 제품과 재수입 제품의 관세율표 번호(HS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산 반출 부품분에 대한 관세

품 목	품질보증 기간	부품보유 기간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 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2년	7년
- 전기난로(팬히터, 로터히터), 선풍기, 가습기	2년	5년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1년	8년
- VTR	1년	7년
- 세탁기, 전기청소기	1년	6년
-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1년	5년
- 주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4년
- 압력솥, 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 식품조리기 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정수기,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1년	3년
- 복사기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5년
- 망원경	1년	3년
- 현미경	1년	3년
2) 핵심부품		
- TV : CRT, 냉장고 : 콤프레서, 에어컨 : 콤프레서, 모니터 : CPT	4년	
- 세탁기 : 모터, 전자렌지 : 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 : Mother Board, VTR : 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 : 헤드드럼, 팬히터 : 버너, 로터리 히터 : 버너	3년	

감면이 불가하여 우리 전자업계의 애로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자진흥회는 해외 진출이 활발한 전자제품에 대하여 재수입관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하였던 바, 본회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 법규(관세법 제33조의2, 동 시행규칙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99년 3월 15일부터 동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제품을 해외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국산 부품 반출분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 시행(재정경제부령 제68호('99. 3. 15)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탁기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고시 개정)

- 산업자원부는 그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등에 대해서 실시해오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및 최저효율기준제도를 TV, 냉장고와 함께 3대 가전제품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가정부문 전력사용량의 56%(97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전기세탁기와 고효율 조명기기이면서 동시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전구식 형광등 기기와 26mm32W 형광램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 관련고시 명칭 : 산자부 고시 1999-24호

- 단, 업계가 IMF 체제하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세탁기에 대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는 2000. 7. 1부터, 저효율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는 최저효율기준제도는 2001. 1. 1부터 시행키로 하고, 또한 확대적용되는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금년 7.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금번 고시 개정에서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을 신고하던 것을 지정시험기관에서 정부에 시험성적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세탁기의 경우 제조업체 자체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 자사 제품에 효율 및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에는 세탁기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민간자율을 확대키로 하였다.

### '99회계년도 해외시장개척기금 본회 용자배정 확정내용

본회에서는 최근 무역협회로부터 '99회계년도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확정받았다.

이번에 확정된 해외시장개척기금은 해외전시회 참가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기금 용자이며 '98년에 이어 '99년에는 미국 COMDEX FALL, 독일 MEDICA, 영국 MEDIACAST, 싱가포르의 HOSPIMEDICA 등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 ○ 용자확정 내역

사 업 명	용 자 확 정 액
1. 해외시장개척단참가	300,000천원
2. 해외전시회 참가	700,000천원
계	1,000,000천원

#### ○ 용자조건

- 연이율 : 연리4%
- 용자기간 : 해외시장개척단참가, 해외전시회참가 → 2년거치 전액상환, 나머지사업 → 2년거치 2년분할 상환

○ '98년도 사업현황

구분	COMDEX FALL	MEDICA	HOSPITALAR	합계
지역 및 전시기간	미국 라스베가스 '98. 11. 16~20	독일 뒤셀도르프 '98. 11. 18~21	브라질 상파울로 '98. 6. 17~20	
참가규모	57개사 80부스	15개사 20부스	12개사 22부스	84개사 122부스
상담실적	184,798천불	22,529천불	19,628천불	226,955천불
계약실적	22,141천불	10,230천불	6,215천불	38,586천불
지원실적	52개사 800백만원	12개사 210백만원	8개사 155백만원	66개사 1,165백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후원(예정)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 주요 전시품목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 장비, 인터넷, 인트라넷 관련 시스템
- 정보통신 부분품 및 각종 약세사리

■ 98년 실적

- 바이어 방문 : 약 13,200명
- 상담 실적 : 184,798천불(22,141천불 계약)

(단위: 천\$)

구분	'97	'98	증가율(%)
상담	91,428	184,798	102
계약	7,020	22,141	215

COMDEX FALL '99  
한국관 전시 참가 안내

가. 전시운영 계획

■ 목적

- 컴퓨터 등 정보통신분야의 세계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산업화 도모
- 중소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 경험 및 인력부족, 비용 부담 등 공통 애로를 타개하고 상호 협조, 보완을 통한 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동전시

■ 전시기간

- 1999. 11. 15(월) ~ 11. 19(금), 5일간
- 개장시간
  - 11. 15 : 10:30 ~ 18:00
  - 11. 16 ~ 18 : 10:00 ~ 18:00
  - 11. 19 : 10:00 ~ 16:00

※ 98년 시간이므로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장소 및 규모

- 장소 : 미국 Las Vegas Sands Expo 2층
- 규모 : H/W(6,050ft<sup>2</sup>), S/W(2,750ft<sup>2</sup>)

■ 행사기관

- 주최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참가신청

- 신청면적 : 단위부스의 배수로 전시면적 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참가약관(소정양식) 각 1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팩스 혹은 우편발송
- 신청 및 문의처
  - H/W 업체
    -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정보산업과 장석준
    - TEL : (02)553-0941(ext. 331, 332), 557-2417
    - FAX : (02)508-4199, 563-7339
  - S/W 업체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국제부 윤창원
    - TEL : (02)586-3411(ext. 403, 404)
    - FAX : (02)584-2604, 584-2605

■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마감

※ 조기신청시 참가비 할인혜택 및 참가비 완납 순서에 의해 부스 우선 선택권 부여

■ 참가비

- 기본부스 : 1,500만원
- 부스 추가시 추가부스에 대해 기본부스금액의 10%씩 할인

■ 참가비 할인

- '99. 3. 31까지 신청업체에 대해 6월 30일까지 납부일자에 맞춰 참가비 전액을 완납할 경우 참가비의 5% 할인(잔금 납입시)

■ 참가비 납부

- 참가신청금 : 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참가비의 20% 납부
- 중도금 : 5. 15까지 40% 납부
- 잔금 : 6. 30까지 40% 납부
- 송금계좌  
H/W 업체 → 한빛은행 : 196-05-065765  
(예금주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S/W 업체 → 국민은행 : 079-25-0024-876  
(예금주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참가비 송금시 은행 수수료는 참가업체가 부담

■ 자금지원

- 지원내용
  - 융자지원 : 한국무역협회 융자금
  - 무상지원 : 정부와 협의중
- 지원대상
  - 참가비의 20%를 납부한 업체(융자의 경우 담보 필요)
  - 회원사 우대(융자금액 등)
  - 융자신청일
    - 1차 신청 : 4월 10일 이전
    - 2차 신청 : 5월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융자신청서 및 서약서 별첨

■ 전시회 기본 제공

- 전력 : 1부스마다 110V 2Kw/h(조명용 1Kw/h, 전력용 1Kw/h)
- 부스 및 장치
  - 기본구조물
  - 영문 상호간판(1조) 및 부스번호판(1개)
  - 전기배선, 콘센트 및 조명(형광등, 스포트라이트)
  - 인포메이션데스크 및 의자(1조)
  - 전시테이블(3개) : 수납장 포함
  - 카다로그 꽃이(1개)
  - 휴지통(1개)
- 참가업체 홍보물 제공
- 물제공(정수기 2대 설치 : 관별 각 1대)
- 공동도우미(4명 배치 : 관별 각 2명)

■ 한국공동관 설치 물품(관별 각 1대)

- 전화기
  - FAX
  - 프린터
- ※ 이용시 현지요금에 준하여 사용료 납부

다. COMDEX FALL '99 한국공동관 주요일정

- 참가신청 접수 : 선착순 접수마감
- 여행사 및 운송업체 선정 : 6월중
- 참가비 완납 : 6. 30
- 업체별 부스 배정 : 7. 8 ~ 7. 9(예정)
- 공동카다로그 및 CD TITLE 제작 : 7월 ~ 9월
- 비품신청 : 8월 ~ 9월
- 초청장 발송 : 9월
- 전시품 선적(선편) : 10월 초
- 부스설치 공사 : 11. 12 ~ 11. 13
- 전시물 반입 및 진열 : 11. 14
- 전시기간 : 11. 15 ~ 11. 19
-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 11. 19(16:00)

라. 특기사항

- 전시전/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업체 소개와 전시품에 대한 정보를 게재함(H/W 제품 : www.eiak.org, S/W 제품 : www.sw.or.kr)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1. 사업목적

국가산업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인력, 정보, 연구시설, 국제기술협력, 기술지원 등)를 구축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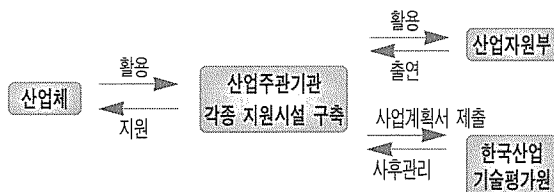
2. 사업수행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기타 공공성 있는 기관

3. 지원자금 내용

- 5년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
- 소요자금의 75% 이내 지원

4. 추진체계



5. 지원내용(전자관련 요약분임)

가. 기술인력 양성

-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건립 사업
  - 주관기관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 사업내용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기술자 양성, 공급
  - 주소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가 101
  - 전화번호 : 0345)4968-192
- 2) 전자부품·재료설계인력 양성 사업
  -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교육내용 : 고주파부품, 압전부품, 센서, 자성재료, 2차전지 등
  - 주소 :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전자부품·재료설계인력 교육센터)
  - 전화번호 : 042)869-8471
- 3) 반도체설계인력 양성 사업
  -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사업내용 :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고급설계인력 양성
  - 주소 :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반도체 설계 교육 센터)
  - 전화번호 : 042)869-0700
- 4) 반도체장비기술인력 양성 사업
  - 주관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내용 : 반도체장비인력 및 관련 업체 인력에 대한 교육
  - 주소 :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7
  - 전화번호 : 0417)560-1456
- 5) 계량·측정기술인력 양성 사업
  - 주관기관 :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 교육내용 : 측정관리자 과정 등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5-3 선홍빌딩 6층

· 전화번호 : 586-2072

6) 품질기술전문인력 양성 사업

- 주관기관 : 성균관대학교
- 교육대상 :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품질개선을 필요로 하는 실무자 및 경영간부
-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 전화번호 : 0331)290-5946

7) 벤처기업 창업예비자 양성 사업

- 주관기관 : 호서대학교
- 교육대상 : 창업예비자, 벤처기업경영자, 중간관리자 등
-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29-1 (중소기업연구소)
- 전화번호 : 0418)540-5367

8) 핵심전기기술인력 양성 사업

- 주관기관 : 한국전기연구소
- 교육내용 : 전기재료기술, 전지기술 등
- 주소 : 경기 의왕시 내손 2동 665
- 전화번호 : 0343)420-6032

9) 기계류 부품설계 인력양성 사업

주 관 기 관	특 화 분 야	전 화 번 호
서울대학교	기계류 · 부품설계	880-8042
고려대학교	기계류 · 부품설계	3290-4272
경북대학교	트라이보기계시스템	053)950-6587
전남대학교	자동화시스템	062)530-1660
부산대학교	기계설계전산화	051)510-1420

나. 기술기반구축

1) 시범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주 관 기 관	특 화 분 야	위 치	전 화 번 호
송도 테크노파크	정밀기계, 부품, 소재	인천 송도	032)589-6301
안산 테크노파크	전자부품, 정밀화학, 정보통신	경기 안산(현양대)	0345)480-7200
대구 테크노파크	전기전자,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소재, 자동차부품, 생명공학	대구	053)950-6190
경북 테크노파크	기계소재, 자동차기술,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한의약, 생명자원	경북 경산	053)810-3022
광주 전남테크노파크	정보통신, 농수산업, 생명공학, 문화예술, 기계, 정밀화학	광주	062)225-3892
충남 테크노파크	신공조설비,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생명공학, 영상	충남 아산	042)220-3223

2) 지역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사업

주 관 기 관	특 화 분 야	위 치	전 화 번 호
연세대학교	재료의 물성분석 및 특성 측정	서울	361-4700
고려대학교	기계, 재료, 정보통신	서울	3291-4007
부산 경남자동차 테크노센터	자동차	부산	051)510-1338
경북대 공학설계기술원	기계, 재료, 건축설계	대구	053)950-6314
부품산업테크노센터	기계부품	광주(조선대)	062)230-6063
인천대학교	기계, 전자	인천	032)770-8900

3) 계측기기개발 복합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

- 주관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사업내용 : 계측기 신기술 개발능력 확충, 기술 지원, 기술정보 제공
- 주소 : 대전 유성구 도룡동 1
- 전화번호 : 042)868-5010

4) 파인세라믹스 Pilot Plant 구축사업

- 주관기관 : 한양대학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기연구 개발된 파인세라믹스의 시생산 및 품질평가를 통해 애로기술 지원
- 주소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 전화번호 : 299-9335



5) 춘천 에너지타운 기반조성사업

- 주관기관 : 춘천시
- 사업내용 : 2D, 3D 애니메이션 제작장비와 게임 영상, 멀티미디어 SW개발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전문 스튜디오 건립
- 주소 : 강원 춘천시 옥천동 111 (춘천시청 미래산업 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61)250-3445

6) 초전도응용기술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

- 주관기관 : 전기연구소
- 사업내용 : 초전도 응용기술과 관련하여 연구시설, 장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 도출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 전화번호 : 0551)280-1659

7) 자동제어반 국산화 연구시설 확충사업

- 주관기관 : 전기연구소
- 사업내용 : 자동제어반의 국산화 신뢰도 제고, 성능평가 향상 지원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시설 구축, 활용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 전화번호 : 0551)280-1417

8) 전기기기 성능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

- 주관기관 : 전기연구소
- 사업내용 : 연구중인 제품 및 개발완료된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
- 주소 : 경기 의왕시 내손 2동 665
- 전화번호 : 0343)420-6050

9) 전자과장해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

- 주관기관 :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 사업내용 :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업무 대행, 산·학·연 공동과제 수행 등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9(진원BD)
- 전화번호 : 579-3291

10) 정보기기시스템 평가 기반구축사업

- 주관기관 : 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사업내용 : 정보기기시스템 평가용 공동장비 확충, 시험실 공동 활용
- 주소 : 경기 군포시 금정동 692-8
- 전화번호 : 0343)455-2924

11) 레이저 이용 진단 기술기반

- 주관기관 : 서울대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
- 사업내용 : 전력, 산업설비의 레이저 진단기술을 위한 광파이버 센서 장비 구축
-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전화번호 : 880-7252

12) 반도체 관련 주변산업의 핵심기술지원 사업

- 주관기관 : 표준과학연구원
- 사업내용 : 전문연구 그룹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반도체 관련 주변산업의 복합적 에로기술 해결
- 주소 : 대전 유성구 도룡동 1
- 전화번호 : 042)868-5391

13) 벤처기업 환경개선사업

- 주관기관 : 산업단지공단
- 사업내용 : 구로공단에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건립하여 벤처기업에 안정적 입지 제공, 각종 지원시설 지원
- 주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49-6
- 전화번호 : 828-1851

다. 산업기술지원

1) 신기술보육(TBI)사업

- 주관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 사업내용 :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희망자에게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보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육성
- 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 전화번호 : 8298-600

2) 제품화구현을 위한 실장검증 지원사업

- 주관기관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사업내용 : 연구개발 완료과제로 실제제품상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결과와 실제제품 사이에서 그 결과를 평가
- 주소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한양대학교)
- 전화번호 : 2290-0529

라. 정보혁신사업

1) 산업기술지역정보화모델 구축사업

- 주관기관 : 산업기술정보원
- 사업내용 : 기업에 필요한 주요 산업기술정보(기업체, 상품, 전문인력 등), 지역별 특화정보를 DB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 전화번호 : 967-8487

2)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 구축사업

- 주관기관 : 산업기술정보망
- 사업내용 : 벤처,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창업, 자금, 인력, 기술 등 11개 분야에 관한 제반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제공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 전화번호 : 966-0561

3)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 주관기관 : CALS/EC협회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술 지원, 기술자금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동화BD 7층)
- 전화번호 : 776-4038

마. 산업표준화사업

1) 자본재표준화사업

- 주관기관 : 산업표준원

- 사업내용 : 자본재산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표준규격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부품공용화, 표준화를 통한 품질균일화 및 경제발전 도모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기계회관 신관 8층)
- 전화번호 : 369-7920

2) 정보산업표준화사업

- 주관기관 : 산업표준원
- 사업내용 : 국제표준화화 활동에 대한 대응체계를 통해 국제표준제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업체의 권익보호, 경쟁우위의 국내 기술을 반영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기계회관 신관 8층)
- 전화번호 : 369-7930

3) 산업정밀측정기술 표준화사업

- 주관기관 : 표준과학연구원
- 사업내용 : 산업정밀측정분야에서의 측정과 평가기술 표준화와 관련분야의 표준물질 개발, ISO 등의 국제기구활동을 통해 측정기술을 표준화하고 표준물질 보급
- 주소 : 대전 유성구 도룡동 1
- 전화번호 : 042)868-5031

4) 신소재 시험평가기술 표준화사업

- 주관기관 : 표준과학연구원
- 사업내용 : 박막재료/전자기재료/세라믹재료 분야에 있어서 ISO/TC 별로 기 확립된 13개 분야의 53건 표준안에 대한 국내 규격의 개발
- 주소 : 대전 유성구 도룡동 1
- 전화번호 : 042)868-5395

5)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을 위한 환경경영 표준화사업

- 주관기관 : 품질환경인증협회
- 사업내용 : 국제기준에 부합한 환경관련 규격들

을 국내실정에 맞게 표준화하고 국내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기법 등을 개발

- 주소 : 서울 중구 중림동 441(한국경제신문BD 5층)
- 전화번호 : 393-3877

### 사. 국제기술협력

#### 1) 한·호 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및 협력사업

- 주관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 사업내용 : 협력대상기술의 도출평가 및 선정 등
- 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 전화번호 : 8298-743

#### 2) 플라즈마기술 국제협력사업

- 주관기관 : 인하대학교
- 사업내용 : 센터를 국내 플라즈마 기술인력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주소 : 인천 남구 용현동 253
- 전화번호 : 032)860-7314

#### 3) 한·미 평판디스플레이 산업협력사업

- 주관기관 : 디스플레이연구조합
- 사업내용 : 미국과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기술 경쟁력 확보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 전화번호 : 556-7963

제완화 추진이 시급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93. 6월)

- 동 법에 의거하여 '93. 8월 발족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별기업·업종의 창업 및 생산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들을 중점 발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완화 도모

### 2.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 기능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
-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
- 기업활동 관련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권고

#### · 구성

- 위원회 : 위원장(양승두 연세대 교수) 1명,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4명
-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 광범위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모

※ 위원장(산자부 기획관리실장) 1명,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9명

- 사무국 : 위원회 업무보좌(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

- 기업애로신고센터 : 기업현장의 애로실태 조사·파악 및 애로과제 접수·신고 등을 담당(6개 기관)

※ 6개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자총연합회

### 3. 기업애로과제에 대한 처리절차

- 기업 등으로부터 사무국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에 제안 또는 신고된 기업애로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토록 관계부처에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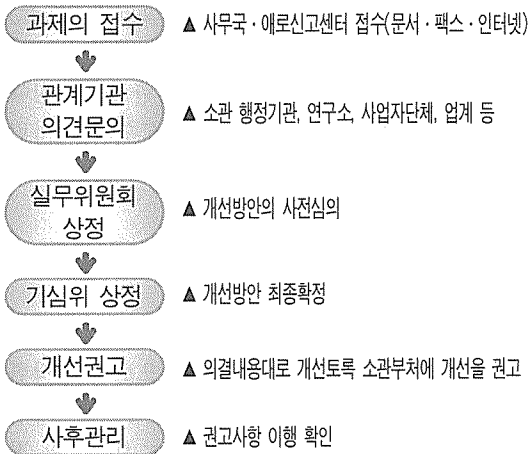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안내

### 1. 설치목적

- 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어 개별법의 개정으로 규제완화가 어렵거나, 기업애로사항 중 규

※ 개선권고 :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

<과제처리 흐름도>



4. 개선권고 추진현황

- 위원회는 '93. 8월 발족된 이후 총 16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간 3,000여건의 기업에로 신고과제를 접수·처리하였음
- 특히, 그 동안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총 812건에 이르는 바, 이 중 706여건이 개선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98규제정비계획』의 추진에 따라 '99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

5. 기업에로과제 신고안내

· 신고처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 담당관실  
 TEL) 500-2714~5 FAX) 500-2716  
 홈페이지 : www.mocie.go.kr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안내

■ 분쟁조정제도 개요

- 과학,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쟁시 재판에 의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권리자 또는 영세업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 특허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의 효율적인 알선·조정을 위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분쟁 발생시 신속·간편·경제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분쟁조정제도 이용시 이점

- 조정위원들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장기간(2~4년)이 걸릴 분쟁이 단기간(2~3개월)내에 해결됨.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므로 분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고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됨.
- 조정과정에서 쌍방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License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분쟁당사자간에 악감정을 남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보게 되므로 기업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됨.

■ 분쟁조정제도의 내용

1. 기구명칭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2. 조정신청대상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3. 조정위원 구성

- 조정위원은 산업계, 학계,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공무원 등 20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 조정위원 중에서 양 당사자가 지명한 3~5명의 위원으로 담당 조정부를 구성·운영

4.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가 작성되면 『민법상 화해 계약』이 성립됨

5. 조정신청방법 : 소정의 조정신청서 서식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FAX로도 신청 가능)

■ 문의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조사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72-0121, 481-5189
- FAX : (042)472-3465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요

-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되었고,

- 국제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핵심 생산기술이나 영업정보 등이 유출되어 기업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98. 2 국내반도체 제조기술 대만유출사건 등)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의 전문화·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등은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킴
- 이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영업비밀)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시의 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음

■ 영업비밀의 정의(요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정의 기업정보가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음.
- 2) 비밀 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 3) 그 비밀은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음. 또한 특정의 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이 필요함.

■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

위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침해당한 자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1) 민사적 구제수단
  -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용회복청구권  
손해배상에 같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
  
- 2) 형사적 구제수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 ※ 기타 의문나는 사항이나 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설치된 영업비밀보호상담센터 (042-472-0121, 조사과)로 문의 바랍니다.

카탈로그 지원

한국무역협회는 이달부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홍보용 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난달 말까지 카탈로그 제작 지원 신청서를 접수, 수출실적과 유명 규격 및 특허취득 등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였고 각 지방에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업체에 대해선 2백만원 한도내에서 제작비용의 70%까지 무상 지원하고 기획과 번역 촬영 인쇄 제본 등 제작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02)551-5254~5

1999품질경영상 포상요령

품질경영상은 품질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품질혁신,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우수업체,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유공자에 정부포상 수여하는 것으로 기업체부문 품질경영상은 품질경영(환경경영 포함)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건설업체, 서비스업체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유공자상은 품질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한다.

신청(또는 추천)업체에 대한 평가는 품질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 및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유공자는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 2. 주관: 산업자원부(산업기술국 품질디자인과)
- 3. 포상시기: 전국품질경영대회('99. 11월) 시
- 4. 신청 및 접수처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 추진사무국 진흥부  
(TEL: 369-8262~4, 369-8267~8)

**포상종류 및 대상**

구 분	종 류	'99포상계획	대 상
기업체 부문	(종합상) · 한국품질대상 · 품질경영상	· 1기업체 · 품질경영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건설·서비스업 및 공공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품질경영상 수상후 3년 이 경과된 업체 또는 사업 부문 ·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기업체 또는 공장, 사업부
	(부분상) · 생산혁신상 · 가치혁신상 · 설비관리상 · 환경경영우수기업상 · 산업표준화상 · 소비자만족우수기업상	· 기업체 상은 트로피 수여	· 기업체 또는 공장, 단체 · 기업체
단체·개인부문	· 우수분임조상 · 품질경영우수 추진본부상 · 품질명장 · 제안상	· 금·은·동상(메달) · 상패 · 상패 · 제안왕, 제안우수상(상패)	· 각 분야별 예선대회에서 입상한 분임조 · 중앙추진본부에 등록된 추진본부 · 기업체 종업원
	유공자 부문 · 훈·포장 및 표창 - 훈·포창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 중소기업청장 표창 - 한국표준협회장 표창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결정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 품질경영추진본부, 품질보증 체계 인증 관련기관 종사자

- \* ① 기업체부문 및 단체·개인부문의 훈격은 대통령 상임.
- ② 각 포상 부문별로 중소기업을 우대함.

**제29회 정밀기술진흥대회 개최안내**

**1. 목적**

- 공업발전법 제11조 (공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의 장려)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97-63호('97. 4. 21) 의거
- 고도화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정밀제품(설계)기술」, 「정밀생산기술」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관련업계에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대회분야 및 참가대상**

**3. 심사방법**

- 1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2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실태조사결과 및 참가기술 발표회를 통한 심사
- 3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정밀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사

**4. 심사항목**

- 출품제품(기술)의 정밀설계기술, 재료 및 부품기술, 가공기술개발 등의 기술수준, 난이도, 자금율, 유일성 성능 등의 기술성(80%)
- 관련산업, 국가경쟁력, 부가가치창출 등의 상품성과 파급효과(20%)

**5. 대회일정**

- 가. 접수기간 : ~6월 30일
- 나. 1차평가 : 7월 20일~23일
- 다. 발표회 : 8월 24일~26일
- 라. 최종심의 : 9월 16일 (정밀기술심의위원회)
- 마. 시상 : 11월중 (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

## 6. 시상내용

- 대상(대통령상) 2업체, 우수상(국무총리상) : 2업체,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 5업체, 은상(중소기업청장상) : 6업체, 동상(산업기술시험원소장상) : 7업체
- 유공자 표창  
대통령상표창 : 2명, 국무총리상표창 : 2명,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4명, 중소기업청장표창 5명, 산업기술시험원장표창 : 4명

## 7. 특전

- 산업기술대전 전시공간 무료활용
- 정밀기술 등급 부여
- 산업기술시험원의 각종지원 (ISO인증, K-Mark인증 품목지정 등)

- 주요 구매기관에 우선 구매 알선

## 8. 주최 및 후원

- 주최 : 산업기술시험원
- 후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
- 추천기관 : 산업자원부 산하 단체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나다순)

## 9. 참가신청 요령

- 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2호)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주최기관에 제출. 단, 비회원업체는 직접제출 가능
- 참가신청 양식은 인터넷 <http://www.ktlre.kr>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 이외에는 비공개

분 야	참가내용	참가대상	비 고
정밀제품기술분야	정밀기술(가공, 조립, 설계, 합성, 분석, 측정, 제어 등)을 근간으로 하여 제품의 신기능 창출, 소형화, 다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실현한 개발제품(예 : 기계 및 그 부품, 화학제품, 전기제품, 전자제품, 광학제품, 소재 등)	전산업체  전문기술보유업체, 대학 및 연구소,	
정밀생산기술분야	제품개발 및 생산에 응용되는 기술중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술이며 각 산업의 기반기술로서 장기간의 기술축적 및 Know-How를 요구하는 전문 단위기술 (예 : 가공기술, 합성기술, 제어기술, 고밀도 실장기술, 고진공, 플라즈마공정기술, 청정기술 등)	Working Group	